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2일(수)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감사원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라.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2

가. 법무부 소관

나. 감사원 소관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라.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2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 제사법 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감사원, 공수처, 대법원, 법무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께서는 지난 1차 심사에서 의견이 있거나 보류되었던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분들 없으시지요?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가. 법무부 소관
- 나. 감사원 소관
-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라.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가. 법무부 소관
- 나. 대법원 소관

(10시04분)

○**소위원장 장경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혜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법무부 다음에 감사원 지난 소위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감사원 소관) 소위원회 의결 자료'라고 표시된 자료고요. 지난 심사 때 세입세출 증액 부분은 다 결정을 해 주셨는데 부대의견 6개가 문구 정리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필요사항' 해서 부대의견(안)입니다.

위의 4건은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종합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것이고 아래 2건은 감사원과 송석준 위원님 상의하셔서 정리해서 받은 문구입니다.

먼저 감사원은 에너지 저장장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 제고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두 번째는 감사원은 정부청사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지방사무소 임차료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은 감사원은 특수활동비를 예산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영수증 및 일시·내역·금액이 명시된 지출서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다.

다음, 감사원은 자문 건수와 분야를 고려한 감사권익보호관 인력풀 구축 및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보장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감사원은 현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검사 권한에 따라 정부의 재정 관리에 대해 충실히 감사한다.

다음, 감사원은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 지적 시 해당 사업의 연혁, 재원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등을 고려한다.

부대의견 6건 보고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감사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6건 전체 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이번에 감사원 관련된 부대의견,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대한 우리 예결소위원님들의 부대의견을 많이 담아 달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저도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한 가지 현안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장경태** 예, 하십시오.

○**박균택 위원** 사무총장님, 어제 기사를 보니까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장님 퇴임식에서 이상한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사가 진실과 맞는 겁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사실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이 정신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에게 비칠 때는 헌법에서 정한 임기 4년을 그대로 지켜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퇴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감사원의 운영 참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어떻게 뭐가 있을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본인이 어떤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본인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탄핵이라든지 또는 형사상 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국회가 나서면 또 소추권을 남발한다고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는 무능해서 그런지 사건이 3년이 되어 가도록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감사원 자체 내에서 어떤 임기 문제든 업무의 활동 보장 문제든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한번 물은 것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일단 감사위원의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균택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감사위원은 내부 감찰과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무직은 징계 대상은 안 됩니다.

○**박균택 위원** 참 난감하군요. 결국은 공수처나 국회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그래서 저희 TF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협조가 잘 안 돼서 본인에 대한 조사를 본인이 거부를 하거나 서면조사를 요청해도 거부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단서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균택 위원** 단군 아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반성은커녕 저런 증세가, 도발할 정도로 더 이상해지고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 뒷배경에 타이거파라는 든든한 후배 공무원들이 벼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사무총장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타이거파라도 신속하게 좀 정리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 부탁합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국민들도 다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엄중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장경태 오늘은 질의보다는 내용만 정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지요.

감사원장 퇴임 소식은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데 좀 다들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글쎄, 이게 왜 이렇게…… 감사위원이면 이분이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래 한 분이고 또 아주 중요한 직을 수행하는 분인데 퇴임식장에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곡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는 말을 할 때는 이분이 정말 상식 없이 그냥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뭔가 징계 대상을 거론할 정도로 좀 이성을 잃고 한 행위라면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이분이 이렇게 한 거를 일면 또 다른 여기에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TF를 구성했잖아요, 감사원에서. 사실은 대통령도 처음 집권 초기에 보복성, 과거 정부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다시 뒤집는 듯한 그러한 행위는 자제하겠다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떤 정부든 그 정부의 국정 목표, 또 국민들께 공약하고 약속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 사실 기존 정부와 다른 정책은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공약을 하고 그것을 또 구현해 내기 위해서 방향을 토론할 수 있지만 과거를 부정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때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것이 새 정부가 바뀌면 새 국정 목표에 따라서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거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과거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무슨 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이런다면 공직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래서 유병호 감사위원이 본인이 그렇게 정말 진정성 있게 호소한 내용들이 잘 안 먹히고 또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적폐 청산 몰이하듯이, 지금은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뭐를 좀 또 하겠다고 그래요. 내란 청산을 한다는 이름으로 각 부처의, 각 기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할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은 어쩌면 모든 기관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한 직무감찰 권한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또 각 부처별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난 정부의 정책을 다 다시 잘못된 양 몰이하고 또 특정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마치 내란에 가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아마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를 이렇게 얼어붙게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국정 목표를 이행하고 국정 수행에 상당한 또 애로가 생길 겁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기본으로 자세를 갖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들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직자들을 그냥 과거 정부의 정책에 편승했

다 그런 이유로 매도하고, 어떤 특정 상황을 갖다가 어떤 특정 프레임을 뚫어서 공격하고 또 거기에서 징계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공직사회가 굉장히 얼어붙고 굉장히 국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 위축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상우 총장님, 한번…… 과거에 여러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 됐지 않습니까? 제발, 지금 어쩌면 어제 유병호 감사위원의 그런 기행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 일부의 우려를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잘 인식하시고 공직사회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잘 좀 직무감찰권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정상우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시급한 게 여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입니다. 그렇게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사무총장님께서는 여야 위원님들 주신 말씀 모두 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혜진 감사원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개 항목에 대해 4800만 원 증액했고 일반회계 세출은 앞에 세입과 연계된 4900만 원과 감사활동경비 4억 200만 원, 총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의 비목 및 세부사업변경이 있었고 이와 함께 총 6건의 앞서 보고드린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우 사무총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처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공수처 들어오라고 해 주세요.

잠시 안내말씀 위원님들께 드리면 공수처와 대법원까지 심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법무부는 11시 정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일정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당에서 11시에 집회가 있어요.

○소위원장 장경태 집회 있으신가요? 한 11시 20분이나 좀 늦게…… 그거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11시 2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재승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공수처 소위 자료 불수용 2건하고 일부 수용 2건이 있는데요. 다른 건 크게 변화 없어서 의견 듣고 하면 되는데 3페이지 3번,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특활비 등의 증빙 자료 제출 관련해서 입장 변화 표명이 있는데 그거 듣고 결정하시면 될 거고요.

4페이지 4번, 공판활동지원 부대의견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성윤 위원께서 공수처 역량강화, 이거 검사 스피치 교육은 살려 주는 대신에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추진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끝에 부대의견 보시면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이 조금 실무적으로 진행되려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공수처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지난 회의에서도 당연히 신동욱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특활비·특경비·수사활동 관련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모든 부처에 해당하는 일관된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수처, 관련 부대의견 포함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수처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수사활동 택시비 집행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특활비·특경비·수사업무 택시비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공판활동지원 관련 이성윤 위원님 지적 부대의견은 어떻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수용하신 부대의견 안을 완성된 문구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수처는 공판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부대의견 문구를 완성된 문장으로 언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공수처는 공판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내용의 공판 관련성, 교육대상 검사의 규모, 예산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법무연수원의 위탁교육을 추진한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이것에는 의견이 없고요. 제가 정보화체계 구축 관련 예산 부분은 충분히 별도로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대신 고도화하고 기존 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라는 단서를 얘기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위원님.

○ 송석준 위원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의견 없으시면……

○ 박균택 위원 저 현안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균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제 유병호 피의자가 감사원에서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 기사 봤습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뉴스로 대략 접했습니다.

○ 박균택 위원 공수처는 그런 자질 없는 뜰끼 어린 공무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저런 사태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 못 느낍니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어떤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 박균택 위원 3년째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요? 일을 안 하면서 왜, 무슨 염치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나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균택 위원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2페이지에 있는 디지털포렌식 관련된 부대의견에 대한 부처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수사장비 사용실적을 제출한다’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포렌식 수사장비 사용실적은 따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및 분석 건수를 제출한다’는 의견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예. 장비 보유 목록 같은 것은 당연히 제출해 주십시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제출했습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공수처 심사 결과는 감액은 없고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대법원 소관 소위원회 의결자료 1~3페이지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감액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특정업무경비와 관서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8시까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부대의견과 같이 앞으로 특정업무경비와 관서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내역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지난번에 국선변호료 지원과 관련해서 ‘상고심 보수를 삭감하겠다고 기재부가 논리를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일단 국선변호 비용이 상당히 낮아서 단계적으로 계속 증액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올해 55만 원을 60만 원까지 올린다라고 하지만 물가인상분을 생각하면 지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정체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더더군다나 어쨌든 대법원에서 일상적인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려 한 700억을 예산으로 해서 재판연구관을 대폭으로 늘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선변호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재판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저는 기재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상고심에 대해서는 소위 복사해서 붙이는 복붙이 많은 아주 단조로운 일이기 때문에 깎는다.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도 평균 40만 원 수준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대법원에서는 질적인 제고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지 이것을 더 깎게 되면 그나마도 무성의하게 상고심 대응을 하던 것들을…… 사실 상고심에서도 일반적인 로펌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법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서를 제출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소시민들은 아무런 법률적 지원들을 더 못 받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텐데, 저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그런 의견을 내더라도 고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좀 증액을 해서 많은 법조인분들께서 적어도 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게끔 해야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선변호 활동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이거나 적극적인 활동으로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장이나 이런 데 할 때 가점제도라든

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고심 국선변호 비용을 깎겠다라고 하는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강력하게 반대를 해 주시고 원안을 고수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향 조치해 나가는 것이, 단계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선변호 증액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권리·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됐었던 상고심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예규 개정이 됐고 9월에서부터 지금이 됐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주신 바와 같이 개정된 예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추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부대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계획, 심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두 가지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일반국선변호료 지원 50억 4700만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서 김용민·박균택·박지원·서영교·송석준·이성윤·나경원 위원님 등이 제안을 주셨고요. 전담국선변호료 지원 관련해서 52억 안과 42억 안이 있었는데 지난 회의 때 52억 안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에서 둘 다 증액 요구로 일단 정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안) 12건은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또 법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분기별 업추비 집행 세부내역과 분기별 특정업무경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한다’라고 부대의견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섭 지금까지 논의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세출은 28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21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54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세출은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경우 수입은 원안을 유지하였고 지출은 10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제기는 2건을 채택하였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하여 총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실 거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예.

○**송석준 위원** 의결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소위원장 장경태** 예, 말씀하십시오.

○**송석준 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법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기서 의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법원 예산은 통과되지만 대법원의 본질은 대한민국에 사법 정의를 확립하고 또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 검찰이 전례가 없고 아주 부당한, 항소를 포기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잠시 후에는 국민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도 가질 계획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77년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여러 가지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헌법을 만들고 각종 법률을 만들어서 갈고닦고 갈고닦고 해서 어찌면 민주적인 회복탄력성 또 경제적인 공정한 배분제도 또 공정한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모범적인 나라로 이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정말 인정할 정도로 그런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관련된 범죄가 수사되고 재판에 올라가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명제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또 재판부는 그럴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사기관들은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소위 유권무죄·유전무죄 이런 나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 당국은 바로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사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 당연한 원칙과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법질서, 정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것을 지켜 내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의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법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금전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당당하고 공정하고 정말 확실하게 헌법질서 또 법치주의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위원장님, 하나만……

○**소위원장 장경태** 예.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형근** 그러면 특경비와 업추비는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부대의견을……

○**소위원장 장경태** 예, 원안입니다.

저도 하나만, 이번에 기사가 나서 그런 데요. ‘재판 중계와 관련된 예산이 0원이다’라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한두 개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은 원인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 중계와 관련된 법들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됐었고요. 내란 특검법은 ‘1심은 필수적으로 모두 중계를 하라’라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특검법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

게 되면 그것을 받아 주는 형태로 바뀌게 됐는데 그 법안이 통과된 시점이 정부안이 만들어진 이후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에서 대응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체 활용 가능한 예산하에서 재판 중계와 관련된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올해 예정된 중계는 저희가 적정하게 운영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이게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회 단계에서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필요한 추경이 있거나 이러면, 추경까지 가려면 또 많은 단계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선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찾으셔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또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판중계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져서 저희가 재판중계의 필요성을 사법부 내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금액도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한 5억 정도 전후 될 것으로, 자세한 것은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혹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라도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재판중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중계가 어려우시더라도 언론인의 취재만 허용해도 요즘 방송사, 하다못해 핸드폰으로도 중계가 다 가능한 시대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박군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50% 삭감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 대폭적으로 많이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가 더 노력하시는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함께 더불어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형원 차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속개하여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장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지난 금요일 소위에서 대부분 법무부 논의는 다 정리가 됐고요.

18쪽, 검찰국 소관 예산이 조금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국 관련해서 특활비나 특경비 그리고 업추비 전환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새로운 의견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대의견 특활비 관련 송석준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 부대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의견 들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법무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기존의 많은 논란을 검토해서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특경비 전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활비 72억 중에 2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총 507억 중에 50억 원을 업추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석준 위원님의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련할 공개 기준이 향후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선 검찰청을 적절히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밀성을 요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동부지검장이 공개한 내용들은 상당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라도 좀 오버한 지나친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요. 이렇게 돌출성 또 무책임한 일선 공직자들의, 기밀을 지키지 않고 공직자의 기본도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묻는 그런 행위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희가 특활비 공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비판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통령실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결산에 임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통일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위반될 경우에 적정한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기준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찰의 고유 기능 또 속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수호꾼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검찰의 기능이 급격히 와해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찰의 고유 기능, 본 모습이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도 하나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도 실제 범죄 대응 능력이나 이런 데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기밀유지 필요성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국민들의 비판을 고려해서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했고요. 20억 원가량은 특경비로 전환해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언론에 하도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노만석 총장대행하고 통화한 게 지금 계속 보도를 통해서 아니까 지금 사실은 서로 말이 다른 것처럼 해서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거든요.

대검에다가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셋 다 항소 포기를 하라는 의견이었다라고 노만석 대행이 대검 간부들한테 설명한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검사로서 25년 근무했는데요 지금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그다음에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어서도 안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반론은 잘 알겠고요. 그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노만석 총장대행 얘기랑 간극이 있잖아요. 어쨌든 통화를 하신 건 맞는 거지요, 노만석 총장대행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얘기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선택지를 차관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어제 통화에서 세 가지 선택지가 다 항소 포기로 본인이 해석이 됐고 그래서 항소 포기 결정에 참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장대행 정도 되는 분이 없었던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통화를 해서 한 내용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먼저 대검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요. 또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무슨 선택지를 줘 가지고 선택하게 한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게 마치 보완수사권과도 연계되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또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 몇 번 정도 통화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번만 통화하셨습니까? 몇 차례 통화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설명 들어보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장관님께서 항소 제기에 대해서 ‘신중 의견이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차례 전화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대검 차장으로부터 회신을 받

았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한 차례 전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노만석 대행 설명하고 다른 겁니까? 얘기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워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장관의 신중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는 거예요?

○**김기표 위원** 구체적인 수사지휘가 아니면 답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오후에 저희 전체회의 있으니까요……

○**주진우 위원** 왜냐하면 오후에는 차관이 안 해서, 제가 5분 내로 마무리 할게요.

○**소위원장 장경태** 빠르게 마무리하시지요.

○**김기표 위원** 공식적인 수사지휘가 아닌데,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진우 위원** 잠깐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는 장관님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장관님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하신다라는 말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직 무대행께서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하였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런데 어제 장관님 말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보고가 올라와서 신중 검토하라고 다시 얘기했다는 건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협의 과정에 대해서……

○**주진우 위원** 여러 차례……

○**법무부차관 이진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에서 항소 제기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진우 위원** 한 차례만 전달한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의견을 전달한 후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장관님이 어제 여러 차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장관님께서 법무부 실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세 차례가량 받으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님께서 장관님의 생각은 말씀을 하셨지만 대검에 전달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한 번이 전부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직접 전달한 거 외에는 검찰과장이나 국장 통해서도 전달된 게 없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딱 한 번이에요? 그럼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중앙지검장하고도 소통을 따로 한 것은 없는 거고요, 법무부 입장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알기로는 저와 검찰국에서는 연락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의

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락하거나 설득한 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해 주시면……

○**주진우 위원** 마무리할게요.

○**소위원장 장경태** 잠깐만요. 하셨으니까 번갈아가면서……

○**주진우 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만 하고요, 한 질문만 하면 되고.

○**소위원장 장경태** 예.

○**주진우 위원** 그러면 그게 3일에 법무부에 어쨌든 보고서가 왔는데 실제로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서가 온 거는 한 차례예요? 보통 대검에서 법무부 할 때 구두로 보고하지 않잖아요. 서면을 올려서 항소제기 의견이나 한 쪽짜리 내지 두 쪽짜리로 정리해서 보고했을 텐데 그 서류를 보낸 건 단 한 번입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서류를 보낸 것은 한 번이고요.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 추가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을 받은 바는 있지만 이런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주진우 위원** 아니, 대검에서 접촉한 건 아까 한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관님 의견, 그다음에 장관님은 항소 제기에 대해서 신중 의견이라고 전달한 것은 한 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대검 실무자들은 보고 과정에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좀 세세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실무자들끼리 보고서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 보충자료나 설명자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서면으로 올라왔던 것은 항소 제기하자는 취지의 의견의 서면이 올라왔던 것은 맞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의견이 통일되면……

○**이성윤 위원**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마세요.

○**주진우 위원** 아니, 지금 보도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하도 양쪽 얘기가 틀려 가지고.

○**법무부차관 이진수** 항소제기 의견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다음, 최혁진 위원님.

○**최혁진 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억 삭감이라고 나왔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70억 전액 다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일부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좀 분명하게 전제조건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번에 정치적 집단항명 쇼에 참여한 검사들은 일체 이 특활비 1원 한 푼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아니, 항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자기 소신껏 항소를 하면 되지 자기가 안 해 놓고는 마치 무슨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의 태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중앙지검장이 항소할 수 있는데 안 했으면 가 가지고 ‘중앙지검장 소신 없이 뭐 하는 거냐’고 벌떼처럼 달려 들어서 욕하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엉뚱한 데다 돌을 던지고 앉아 있어요. 마치 제가 볼 때는 약속대

련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연루돼 있는 정치검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특활비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쨌든 윤석열·김건희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정치 외압, 혀위·날조 수사에 관여되거나 부역한 자들은 일체 이 특활비에 1원 한 장 쓰지 못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은폐하는 데 관련됐던 검사 일체, 김건희 황제의전 조사와 관련된 그 검사들 일체, 대장동 사건 혀위·조작·날조·위압적 수사 등의 정치 편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검사들 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과 내란 계엄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검사들, 그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 전체 저는 특활비 1원 한 장 쓰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앙지검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중앙지검장이 대장동 사건의 혀위·조작·날조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태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소해 가지고 자기가 다칠 것 같으니까 외압에 의해서 항소 포기한 것처럼 쇼를 하고 사직서 냈지요? 법무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직서 처리할 거예요? 뭐 할 겁니까?

전 수사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직위 해제하고 그다음에 대기발령 상태로 놓고 수사해서 위법적 행위가 생겨 나게 되면 해임 조치를 통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물밑에서 뭘 짰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약속대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로펌 가 가지고 돈 벌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가 가지고 공천받으려고 하는 심산입니까?

이런 거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전액 삭감이 맞다라고 생각하나 만에 하나 민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예산이 일부 고려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 위원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정치 사건에 관련됐던 검사들은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이성윤 위원님 하시고 송석준 위원님 하시지요.

○**이성윤 위원** 차관님, 대검하고 법무부하고는 수없는 의사소통이 있는 거지요? 소통을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 사건 등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잖아요, 또 법무부가 당연히 대검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런 소통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도 법무부에 근무할 때 대검하고 엄청난 소통을 했지만 그게 결과로 나온 거라든가 아니면 장관이 직접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행사했다든가 이런 공식적인 의사결정 외에는, 결과 외에는 과정은 일체 얘기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도 또는 어딜 가든 간에 그런 태도를 좀 견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이번에 검사장들 8명이 집단행동한 거 정말 국기문란행위라고 봅니다. 엄청난 항명이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예산철에 예산 심의하는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

하십니다, ‘예산을 전액 깎아라’.

특활비 법무부에서 50억을 요구하시는데 특활비를 증액 이렇게 해 주면 그 돈이 결국 그 집단행동한 검사장들한테 갈 거 아니냐, 이들을 자르지를 못할망정 어떻게 특활비까지 주느냐 이런 비판이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혹시 이런 여론 차관님 아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저는 특활비의 목적이 정말 말없이 밤을 새 가면서 열심히 서민과 민생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이번에 특활비를 만일에 법무부 요구나 그 이하로 특활비를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들이 있는 청에는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에 차제에 특활비 집행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텁다운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직접 일선 청에서 정말 이게 민생·서민생활 수사에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고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심사하고 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접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바꾸는 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이러한 집행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개선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바텀업 방식, 상향식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특활비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검사들의 민생 사건 수사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절차를 취하게 될 경우에 적시 집행이라든지 기밀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원활한 집행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항상 기밀을 내세워서 특활비를 이렇게 텁다운 방식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쌈짓돈으로 쓰인 겁니다. 이번에 제대로 법무부장관이 특활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쌈짓돈으로 쓰일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씻지 않으면 특활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검찰이 무슨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부대의견으로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이라든가 서민 생활 침해사범 수사에 집중 집행한다’ 또 ‘이번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활비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또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은 검찰로부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에 직접 집행한다’ 이 정도 부대의견을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석준 위원 발언……

○소위원장 장경태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이성윤 위원 예.

○소위원장 장경태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차관님, 지난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한다, 이를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 주장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데 특히 이번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실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인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대통령실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협의가 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의를 좀 하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아까 주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너무 나도 의혹이 많아서 제가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라고요. 저희가 업무 수행을 하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얘기할 순 없지만 어쨌든 소통은 한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거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예민한 문제니까 그렇다치고, 그러면 본인은 이번 이 항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의 심사를 책임지는 법무부 대표로서 왔고 업무적 양심으로 항소의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공직자로서의 이런 것도 있지만 검사 이진수로서의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저는 개인이기 이전에 법무부차관으로서 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무부 내부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사태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많은 언론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언론 보도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 검찰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져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법무부차관은 일반 검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장관을 도와서 같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항소 포기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입장을 얘기 좀 해보세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청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사건 결정에 관여하거나 개입·외압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수년간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으며, 지금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공문서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인 입장인데 현실은 이미 관계자들의 진술 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미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석준 위원 어쨌든 공문서로는 안 했지만 법무부장관의 이런 ‘신중해라’ 또는 어떤 방향성이 전달이 됐고…… 통화를 했다면서요, 대검에. 통화하면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장관님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고 사전 조율과 협의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런 의견이 있으니……

○**법무부차관 이진수** 왜냐하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과 이 항소가 포기됐어요.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 생각하고요.

○**송석준 위원** 아니, 그런 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선 검사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집단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차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을 해서 장관님과 상의하고 후에 대통령 민정수석실과 협의해서 무언가 법무부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선에서 검사들이 들끓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차관이 입장이 없고 뭐라고 얘기 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지금 예산 심의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무부차관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일선의 검찰들의 이런 동요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궁금한 게 풀릴 거고.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검찰의 결정이었고요. 저희가 법무부에서 예컨대 가사, 수사 지휘권 발동이 공식적으로 됐다든지 그렇다면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책임 회피성 발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검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송석준 위원** 검찰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송석준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향은 받은 거잖아요. 이쪽에 메시지는 갔지요.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충분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위원** 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소위원장 장경태** 짧게 부탁드릴게요.

○**주진우 위원**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다른 사건도 이렇게 사전 협의를 다 해요? 그런 사건이 많지는 않지요? 왜 제가 좀 그러냐면 원래 법무부에서 지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총장만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 과정과 지휘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예를 들어서 이 의견을 뒤집으려고 하면 그 의견을 정식으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협의라고 해서 사실상 장관이 인사권자이고 지휘권자이기도 한데 그것을 그대로 그 내용의 불편한 정도를 장관이 불편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로만 협의라고 하

면.....

지금 노만석 대행의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본인은 이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장관의 지휘권 발동도 공식적으로 이어 올 것으로 생각해서 사실상 지휘로 받아들였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단순한 협의가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금 법무부에서.....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항소 관련된 사건에서 또 협의한 적 있어요, 이 건 외에?

○법무부차관 이진수 주요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일선에서 보고가 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총장하고 직접 소통한 적이 있느냐고요, 이 건 외에. 차관님이 장관님의 지시사항으로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 있어서 전달해서 좀 협의한 적이 있어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른 사건까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위원 다른 사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이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하지만 대검에서 결정을 하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후에 충분히 하실.....

차관님, 그 정도 하시고요.

주진우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도 많은 궁금증을 부족하게나마 해서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내용은 이성윤 위원님께서 철회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보고한 대로 특활비 20억 삭감 또 특경비 50억 삭감 또 업추비로의 전환 등을 비롯해서 여러 특활비나 특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 점을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송석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대의견(안)으로 ‘법무부는 특수활동비·특수업무 경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기준과 맞지 않게 공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조율했는데요. 혹시 이 정도는, 기준을 국회에 보고하시는 거라고 문구가 일단 되어 있고 기준이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님과 최혁진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대의견(안)입니다.

첫 번째, ‘특수활동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

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세 번째, '다만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은 검찰로부터 그 구체적인 용도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직접 집행한다'라고 해서 2항에 있는 해당 검찰청에 대해서 민생과 서민 수사에 소요가 있을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세 번째 부대의견(안)을 제가 좀 수정해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의견이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최대한 저도 지혜를 모아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번 '서민과 민생과 관련된 수사 집중'은 당연히 수용하시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의 해당 집단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 측면에서의 집행 부분과 '다만 그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용도를 법무부장관이 보고 받아 검토한 후 직접 집행한다'라는 정도 세 번째 안으로 여지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대의견을 좀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문구 검토에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필요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일단 재직 중인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일선 검찰청의 범위가 넓어져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개별 검사장들의 집단행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요. 해당 검찰청 구성원들이 모두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래서 그 해당 집단행동에 대한, 지금 현재 어찌 되었든 특활비 집행과 지금은 검찰청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지검과 지청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관이 제대로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의 국민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 소요에 대해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게 지금 세 번째 부대의견으로 열어 드린 거거든요. 혹시나 검사장이 쌈짓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불신과 의구심에 대해서 저희 국회가 화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적절성을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전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넣은 거거든요.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이게 법무부에서 사전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또 다른 집행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 보고는 대검찰청에서 받도록 하고 법무부에서는 사후 보고를 받는 형태가 집행 프로세스에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활비가…… 내용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도를 보고받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항목, 비목……

○소위원장 장경태 구체적인 항목……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직접 집행한다', 용도가 아니고 항목입니다, 항목.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위원장님, 그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법무부가 모든 수사에 대해서 그 수사비 집행에 관여하면서 수사에 관여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향식 방식으로, 각 지검에서 어떤 수사에 어떤 용도로 필요하다는 걸 대검에 보고하면 그렇게 집행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그 부분으로 대검에서 집행한 내역을 사후에 법무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도·감독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이 용도라는 표현을 제가 항목을 잘못,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항목이라는 표현이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보고한 이 공개를 저희 국회에 보고하신 수준의 목록인 거지요? 목록만 보고하시고 용도까지는 아닙니다. 항목만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 하여금 특활비 집행을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미리미리 보고 수사하는 내용을 알겠다는 뜻이 아니고.

○**소위원장 장경태** 목록만.

○**이성윤 위원** 어차피 예산에는 항목·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보고하고 예산 다 쓰고 또 보고해야지요, ‘이번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걸 용도까지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닌데.

○**소위원장 장경태** 제가 항목을 지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항목입니다, 항목.

○**박균택 위원** 아니, 용도 문제가, 원래 중요 수사할 때는 법무부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 의무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이성윤 위원** 내용을 알자는 게 아니고, 지금도 검사장들 비호하고 그러면 특활비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앞으로 동네 조무래기 사건들을 수사할 것 아니고 2대 범죄, 중요한 범죄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런 중요 사건들은 또 법무부에 원래 사전 보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수사정보 누설이라고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취지를 잘 존중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잘 보좌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 취지를 잘 반영할 텐데……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는 집행내역 수준의 목록과 항목, 항목을 의미한 거고요. 용도는 아닙니다. 제가 발언 정정했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면 목록과 항목이라는 표현이시라면……

○**소위원장 장경태** 예, 항목입니다, 항목. 정확하게는 항목인데 제가 지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러니까 항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비목인 것이고 그것이 특수활동비 등이어서 이 항목의 말씀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그 구체적 기준은 법무부에서 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성상현**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인 집행 적정성 통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항목’이라는 걸 부대의견으로 한 것은 그만큼 쌈짓돈이 아닌 정말 민생과 서민에 필요한 수사로 쓰이게끔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 항목에 대한 기준도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련하실 때 그 점을 잘 참조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여지를 상당히 많이 열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 부분은 법무부에서 마련한다’는 부분을 부기해 주시면, 문구에 넣어 주시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직접 검토한 후’ 나오잖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소위원장 장경태** 아니, 송석준 위원님께서 주신 부대의견(안)에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 집행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고’ 할 때 이 기준은 법무부가 마련해서 보고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전항에 의거해서 뒤에 있는 ‘구체적 항목’이라는 표현도 부대 해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함께.

○**김기표 위원** 저는 그래도 지금 좀 토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법무부 의견도 참작할 만해서, 그 검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집단행동한 검사장이 쌈짓돈 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주관하에 특수활동비를 약간 통제하는 면이 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무상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취지를 살리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취지도 살리고 실무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장경태** 그러면 ‘전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은 구체적인 기준을 법무부가 마련하여 구체적인 항목으로 신청된’……

○**김기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전항의 검찰청의 경우에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법무부가 추후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되면 좋겠는데 문구는 어떻게, 이 정도 취지로.

○**이성윤 위원** 지금까지는 특활비 관련해서 집행은 모두 총장한테 맡기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생겼는데 이 말의 취지는 이제는 법무부가 직접 좀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 주면서 용돈 용도도 못 알아봅니까? 학용품 살지, 볼펜을 살지, 연필 살지 모르지요? ‘아버지 저 공부할 수 있게 돈 주세요’ 이건 못 합니까? 이것 수사기밀 침해입니까? 왜 이렇게 법무부가 검찰 통제에 대해서 소극적입니까. 국민들은 지금 특활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예산을 더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이 자기 수사할 때 수사기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고하겠지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무슨 수사기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이고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할 것인데요.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가 사후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이 맞지 사전에 저희가 심사해서 보내는 방식은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서……

○**이성윤 위원** 사후의 심사 문제하고 재배정 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후의 심사는 재배정한 예산을 어떻게 잘 썼느냐를 검사하는 거고 재배정 문제는 그야말로 예산 배정권, 인사권…… 인사·예산권이 법무부에 있지 검찰에 있습니까? 그걸 확실히 세우라는 뜻입니다. 수사에 간섭하거나 또는 수사 내용을 알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수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사법, 서민 생활 측면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그

걸 법무부가 제대로 감시하라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대검에서 예산을 짜지 않고 법무부가 하는 이유가 뭐니까? 법무부가 예산을 직접 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것 같으면 대검에다가 예산권을 넘겨줘야 맞지요. 법무부가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이 예산이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전·사후에 감독해야 되지요. 사후에만 보겠다? 이런 예산집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용품 사겠다고 용돈을 타 갔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면 질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후 감독이고요. 사전에도 자녀가 부모한테 이건 학용품용 뭐 이런 용도를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는 건 아니어도 ‘저 학교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수사기밀이고 사전에 수사에 간섭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없던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두렵겠지만 이렇게 해서 진짜 특활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마무리해 주십시오.

어찌 되었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부처에서 우려하시는 바를 좀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어찌 되었건 구체적인 기준을 법무부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 송석준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부대의견에 있고요.

다만 관련된 구체적 항목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서 검토한 후 집행하도록 하는 취지를 좀 살려서 부대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이렇게 사후적 조치같이 실효성이 없는 조치로 통치려고 하면 이 예산을 일부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오류는 자체적인 사후조치들이 안 됐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중대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은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감찰이 사실 어설프게 되고 가벼운 경징계로 끝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활비에 대해서 사후 보고 체계로 관리가 된다, 아마 검찰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조치라고 믿는 검사들 스스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반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적으로 꼭 필요한 수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입증, 점검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사후적 책임을 묻는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게 특활비 선정의 전제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예산안 검토는 다 했으니까요 저희가 지금 정리한 대로 진행을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구체적 자구에 대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또 전체회의에서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법무부는 200억 원 감액하였고 세출은 2380억 8200만 원을 증액 그리고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80억 1100만 원을 순증하였으며 19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은 총 5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대의견은 2건입니다.

끝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의견 제시는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장경태 참 많은 우려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요 또 노력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심사를 위해서 많은 고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부대의견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인 자구 수정에 대해서 소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수 차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 중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및 경미한 숫자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법사위 예결소위 예산심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기표 박균택 송석준 이성윤 장경태 주진우 최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법무부

차관 이진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임시회의록